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5-34
체육건강예술교육과-2408
(2025. 2. 21.)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2025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교 보건 분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1
2	학생 건강검사	5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17
4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25
5	학생 시력·구강관리	31
6	요보호학생 관리	35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41
8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45
9	보고목록 및 기관(부서)별 역할	49
	〈보고서식 1〉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53
	〈보고서식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55
	〈보고서식 3〉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57
	〈보고서식 4〉 학생 소변검사 추진 현황	59
	〈보고서식 5〉 학생 결핵검사 추진 현황	60
	〈보고서식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61
	〈보고서식 7〉 보건교육 실시 현황	63
	〈보고서식 8〉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65
	〈보고서식 9〉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68
	〈보고서식 10〉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70
	〈보고서식 11〉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72

10 참고자료 73

□ 학생 건강검사

[참고자료 1] 문진표(초등학생용)	77
[참고자료 2] 문진표(중·고등학생용)	78
[참고자료 3] 구강검진 문진표	79
[참고자료 4]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80
[참고자료 5] 건강조사 설문지(중학생용)	82
[참고자료 6] 건강조사 설문지(고등학생용)	84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6
[참고자료 8]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88
[참고자료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90
[참고자료 10] 검진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	92
[참고자료 11]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94
[참고자료 12]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95
[참고자료 13]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96
[참고자료 14] 학생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97
[참고자료 15]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서식	98
[참고자료 1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99
[참고자료 17]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서식	100
[참고자료 18] 검진 인력 현황	102
[참고자료 19] 학생 건강검진 개인정보 위탁계약서(안)	103
[참고자료 20] (학교실시용)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예시)	105
[참고자료 21] 개인정보 파기 협약서(예시)	109
[참고자료 2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위탁사항 공개(홈페이지 게시용)	110
[참고자료 23] 검진기관 지정기준	111
[참고자료 24]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113
[참고자료 25]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114
[참고자료 26]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및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116
[참고자료 27]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117

□ 감염병 등 보건 일반

[참고자료 28] 학교 교구·설비기준(학교 보건실)	118
[참고자료 29] 감염병 관련 규정	120
[참고자료 30] 법정 감염병의 종류	128
[참고자료 31] 학교 결핵 환자 발생 관리 서식	129
[참고자료 32]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30
[참고자료 33] 결핵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서식)	135
[참고자료 34] 평상 시 감염병 대응 흐름도	137
[참고자료 35]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138
[참고자료 36]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 방법	139
[참고자료 3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141

2025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 간단한 문구 수정사항 및 경미한 법규 개정사항은 주요 변경내용에서 생략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내용	비고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가. 기본방침 ○ 보건실의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보건실 옆(인접교실)에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가. 기본방침 ○ 보건실의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옆(인접교실)에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p. 3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2. 학생 건강검사	○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p.8</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이 실시</td></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p.11</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p.15</td> <td style="text-align: center;"> 마)검진비용 </td> </tr> </table>	p.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이 실시</td></tr> </table>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이 실시		p.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p.15	마)검진비용	○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p.8</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td></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p.11</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p.15</td> <td style="text-align: center;"> 마)검진비용 ※ 시력검사: 별도 지원 없음 (위탁실시할 경우 학교 자체예산 편성) </td> </tr> </table>	p.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td></tr> </table>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		p.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p.15	마)검진비용 ※ 시력검사: 별도 지원 없음 (위탁실시할 경우 학교 자체예산 편성)	p.8,11,15 <수정> *25.1회 학교보건 위원회 심의내용 반영																				
p.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이 실시</td></tr> </table>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이 실시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이 실시																																																															
p.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p.15	마)검진비용																																																														
p.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시력검사</th></tr> <tr><td colspan="2">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td></tr> <tr><td colspan="2">시력측정</td></tr> <tr><td colspan="2">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td></tr> </table>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																																																							
시력검사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시력측정																																																															
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																																																															
p.1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나) 검사대상 및 방법</th></tr> <tr><th>구분</th><th>별도검사</th></tr> <tr><td>방법</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td></tr> </table>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별도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대한결핵협회) 																																																														
p.15	마)검진비용 ※ 시력검사: 별도 지원 없음 (위탁실시할 경우 학교 자체예산 편성)																																																														
	(1) 건강(구강)검진료 (금액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초</th> <th colspan="2">중</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1학년</th> <th>4학년</th> <th>1학년</th> <th>1학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남</td> <td>정상</td> <td>18,210</td> <td>27,730</td> <td>27,730</td> <td rowspan="2">○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20원</td> </tr> <tr> <td>비만</td> <td>38,260</td> <td>47,780</td> <td>47,780</td> </tr> <tr> <td rowspan="2">여</td> <td>정상</td> <td>18,210</td> <td>27,730</td> <td>28,970</td> <td rowspan="2">-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td> </tr> <tr> <td>비만</td> <td>38,260</td> <td>47,780</td> <td>49,020</td> </tr> </tbody> </table>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2023. 12. 29.)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	구분	초		중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8,210	27,730	27,730	○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20원	비만	38,260	47,780	47,780	여	정상	18,210	27,730	28,970	-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	비만	38,260	47,780	49,020	(1) 건강(구강)검진료 (금액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초</th> <th colspan="2">중</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1학년</th> <th>4학년</th> <th>1학년</th> <th>1학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남</td> <td>정상</td> <td>18,680</td> <td>28,240</td> <td>28,240</td> <td rowspan="2">○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70원</td> </tr> <tr> <td>비만</td> <td>38,830</td> <td>48,390</td> <td>48,390</td> </tr> <tr> <td rowspan="2">여</td> <td>정상</td> <td>18,680</td> <td>28,240</td> <td>29,490</td> <td rowspan="2">-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td> </tr> <tr> <td>비만</td> <td>38,830</td> <td>48,390</td> <td>49,640</td> </tr> </tbody> </table>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2025. 1. 10.)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	구분	초		중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8,680	28,240	28,240	○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70원	비만	38,830	48,390	48,390	여	정상	18,680	28,240	29,490	-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	비만	38,830	48,390	49,640	p.15 <수정> *단가 현행화
구분	초		중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8,210	27,730	27,730	○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20원																																																										
	비만	38,260	47,780	47,780																																																											
여	정상	18,210	27,730	28,970	-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																																																										
	비만	38,260	47,780	49,020																																																											
구분	초		중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8,680	28,240	28,240	○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70원																																																										
	비만	38,830	48,390	48,390																																																											
여	정상	18,680	28,240	29,490	-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																																																										
	비만	38,830	48,390	49,640																																																											
	(2) 별도검사로 (금액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소변검사</th> <th colspan="2">결핵검사</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고2</th> <th>고3</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검사비용</td> <td>970</td> <td>지방자치단체 지원</td> <td>4,27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970	지방자치단체 지원	4,270		(2) 별도검사로 (금액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소변검사</th> <th colspan="2">결핵검사</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고2</th> <th>고3</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검사비용</td> <td>970</td> <td>지방자치단체 지원 (※ 노원구, 서대문구는 학교예산으로 편성·지원)</td> <td>4,29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970	지방자치단체 지원 (※ 노원구, 서대문구는 학교예산으로 편성·지원)	4,290		p.15 <수정> *단가 현행화 고 결핵검진 예산 편성 관련 안내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970	지방자치단체 지원	4,270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970	지방자치단체 지원 (※ 노원구, 서대문구는 학교예산으로 편성·지원)	4,290																																																												

구 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내용	비 고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p>나. 추진방향</p> <p>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중략)</p> <p>나)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물품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방역물품 구비 	<p>나. 추진방향</p> <p>1) 학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강화 (중략)</p> <p>나)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물품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며, 자체 점검을 통해 물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충 ※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자침(권장사업)에 따라방역물품 구입예산확보 	<p>p. 19 <추가> * 2025년도 지침 반영</p>
	<p>2)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p>2)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 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 10시간 이상) 	<p>p. 20 <수정>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교육(지원)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당)·담임교사대상 원격연수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과정 개설·운영 (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공무원감염병 교육의무화(법정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024.9.15.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교육 대상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p>p. 20 <수정, 추가> *법률 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및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학교 구성원(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이 참여 ※ 최근 2년 이내에 모의훈련에 참석한 학교 구성원은 기급적 참여 지양 ○ 학생 빈발 감염병(인플루엔자, 수두, 수족구병, 결핵, 유행성각결막염, 코로나 19)을 선정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제공 (2023년) 	<p>3)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p> <p>가) 서울시교육청 주관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세부 계획 추후 별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습형 모의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집단 환자 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역량 강화 <p>나) 학교 감염병 대응 자체 모의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응체계를 점검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교재, 워크북 및 체크리스트 등 활용 	<p>p. 20 <수정></p>

구 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내용	비 고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p>6) 학교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감염병 담당자는 설명회 및 역학조사 참여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입소 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p>7) 학교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감염병 담당자는 설명회 및 역학조사 참여 ○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학생 중 결핵 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예방교육 실시 권고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 (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 협의) ▲ 이후 연 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 검사 필요 없음 </div>	<p>p. 23 <수정,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p>
4.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p>가. 기본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흡연,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p>가. 기본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p>p. 27 <수정>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p>
	<p>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p> <p>2) 학교 내 체계적인 마약,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교육시마다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2024. 3월 중) ※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교육자료 배부 예정 ○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 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교육자료 활용 	<p>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p> <p>2) 학교 내 체계적인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정이며, 우수 활동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 ○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 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마약청정 대한민국(www.nodrugzone.mfds.go.kr) 교육자료 활용 	<p>p. 29 <수정,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p>
		<p>다)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서울시교육청, 법무부 법교육, 식약처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예정 * 해당 교육 신청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p>	<p>p. 29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p>

구 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내용	비 고
4.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3) 보건실 의약품 관리 사항 가)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 부재 시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품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및나목, 의약품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 의약품과 의약품외품은 분류하여 보관, 보관기간 준수 등 관리 철저 	p. 30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5. 학생 시력 · 구강관리	2) 학생 구강관리 강화 가) 양치 실천을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화 ※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별도 공문 시행) <표>	2) 학생 구강관리 강화 가) 양치 실천을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화 ※ 기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정부 이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 (별도 공문 시행)	p. 35 (변경) *치과주치의 사업 전환(변경) 안내
6. 요보호 학생 관리	6.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6. 요보호학생 관리	p. 40~41 (변경)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나. 근거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나. 현황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 처치교육 계획 수립(3월 31일까지)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가능 *예시 간호사 면허소지자,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등	p. 43 (수정,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다. 추진방향 1)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생략)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다. 추진방향 1)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생략)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p. 43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구 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변경내용	비 고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교직원]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	p. 43~44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표>교육계획수립 시 교육대상의 범위 1. 모든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	<표>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하는 방안 고려 - 교육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2025. 2월 중 배부 예정)	p. 43~44 <수정, 추가>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9. 보고 목록 및 기관 (부서)별 역할		<input type="checkbox"/> 기관(부서)별 역할	p. 52 <추가>
	<서식 6>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보고	보고서식 수정	p. 61 <수정>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서식 8>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input type="checkbox"/> 학생 교육 실시 현황 <표>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교육 실시 현황 <표>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학생 교육 실시 현황 삭제	p. 65~67 <수정>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서식 9>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보고기관: 초·중·고	보고기관: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보고서식 수정	p. 68~69 <수정> *교육부 건강증진 추진방향 반영
	<서식 10>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보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보고서식 수정	p. 72 <수정>
10. 참고 자료	<참고자료 11> 학생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학생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p. 94 <수정>
	<참고자료 20>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	p. 105 ~ 108 <수정>
	<참고자료 29> 감염병 관련 규정	29. 감염병 관련 규정 (중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중략)	p. 122 ~ 123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반영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가.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 설치
- 보건실의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옆(인접교실)에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제3조(보건시설 등), 같은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참고

나. 추진방향

1) 학교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실 규모 및 시설·기구 확보

- 가) 보건실은 「학교보건법」¹⁾에 의거 66㎡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학생·교직원이 이용하기 쉽고 통풍·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
- 나) 「서울특별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²⁾에 따라 시설·기구 구비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 응급처치용 기구³⁾는 각급 학교에서 필수로 구비(2013. 감사원 지적사항)
 -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 확인·관리
 - ※ 규칙 개정(2019. 10. 4.) 관련 생리대 보건실 필수 비치 및 유료자판기 설치 금지(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2) 교육규칙 제1044호(2022. 7. 21.), [참고자료 1] 참조

3) 응급처치용 기구(「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캘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 다) 보건실은 학생들이 건강 상담을 위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적절한 실내온도(18℃~28℃)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냉·난방시설 설치
- 라) 신축, 개축, 증축학교는 설계 시부터 보건실 적정 규모 확보와 시설 및 기구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보건실 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협조)

2) 학교 보건실 개선(현대화) 추진

가) 주요시설 및 구성

- 보건실 공간: 처치공간, 상담실, 안정실, 보건업무공간, 다용도 공간, 수납공간, 대기공간, 소아당뇨 학생 주사처치실 등
- 보건교육실 또는 학생 별도 관리실: 책걸상, 교육용 교구 등

2

학생 건강검사

2

학생 건강검사

가. 기본방침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상담·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학생건강 증진 사업 시행

나. 추진방향

1) 학생 건강검사

- 가)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신체 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초1·4, 중1, 고1, 특수 및 기타 학교도 동일학년 적용) 등을 적극 실시하고 교무업무시스템⁴⁾으로 관리
- 학생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운용
 - ▶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 관련 규정 숙지·적법 운영 관리 철저(교육부 및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⁵⁾ 및 관련 민원 적극 대응
 - 학교단위에서 검진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질(質) 관리 조치
 -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는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참고자료 27]

5) 학생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서식) [참고자료 15]

-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 요청
-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

2)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 · 운영 (2024년 ~ 2026년, 3년 단위)
 - 표본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참조
- 표본학교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9월 30일까지)]

3) 별도 검사

- 건강검사 외에 기본적인 필요 검사 실시로 학생의 건강 보호 · 증진 도모
-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 방법

구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고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 학년 제외)
내용	요단백, 요당, 요잠혈	시력측정	X-선 검사
방법	- 학교 방문검진 - 검사기관 강동지역 학교건강지원협회 강서지역 한국학교보건협회 ※ 위 기관 이외에 학교 자율적으로 검사기관 선정·운영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정	- 교직원 실시, 위탁 등 ※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한 검사방법 결정	- 학교 방문검진 - 검사기관: 대한결핵협회

- * 학교건강지원협회(☎ 954-3011, 팩스 954-3012)
- * 한국학교보건협회(서울시지부 ☎ 782-7527, 팩스 785-7528)
- *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 793-4894, 팩스 793-4898)

- 시력검사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실시
(중 · 고등학교급의 경우 필요 시 자율 실시)
- 별도검사 비용은 법령에 의거 반드시 편성하여 시행하며,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에 대하여는 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 시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지원)

- 별도검사 결과 관리 및 조치
 -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일자, 검사명, 검사기관)하고, 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에 기재 관리
 - 흉부X-선 검사결과 유소견(폐결핵)자는 각 구 보건소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여 치료여부 확인 등 집중 지도·관리
 - 소변·시력검사의 이상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정밀검진, 조기 치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관리 철저
- 별도검사 실시에 따른 협조 사항
 - 학교의 장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변검사, 결핵검사에 적극 협조
 - 별도검사(소변, 결핵) 실시 기관은 소변검사, 결핵검사 실시 시 학교 학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검사 당일 결석 등의 사유로 검사에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
 - 소변검사 실시 기관은 소변검사 결과 이상자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결핵검사 실시 기관은 결핵검사 결과 결핵환자(의심자)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보호자 통보)
- 소변검사 기관



소변 검사기관	지역구	비고
학교건강 지원협회 (강동지역)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1개 자치구 관내 학교
한국학교 보건협회 (강서지역)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14개 자치구 관내 학교

한국학교보건협회(강서지역)

다. 학생 건강검사 세부 추진 계획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6조(별도의 검사)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2025. 1. 10.)
- 「건강검진 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지원부-273호, 2025. 1. 15.)
-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2022. 12. 26.)

1) 건강검사의 실시

학생건강검사	신체발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 몸무게 <p>*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가능</p>	1학기 말까지
	건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구조화된 문진표 조사) <p>*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가능</p>	1학기 말까지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연중
별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검사 • 시력검사 • 결핵검사 		연중

2) 학년별 건강검진 내용

구 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공통항목	척추, 눈·귀·콧병·목병·피부병, 구강, 소변검사, 혈압(단, 구강은 초등학교 전학년)			
추가 항목	비만학생: 허리둘레,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 AST·ALT)			
	결핵검사		결핵검사 혈색소(여학생)	

3) 기본 방침

- 학교의 장은 원활한 건강검사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당해학교 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환류 실시(「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교의 장이 실시
※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검사 이외의 건강검사 일체 불허
- 검진기관은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건강검사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⁶⁾ 중 의과·구강 각각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

4) 세부 추진 내용

가) 실시기간: 2025. 3 ~ 11월 말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신체발달상황 ⁷⁾	건강조사 ⁸⁾	건강검진	별도검사
대상	전학년	전학년	초 1·4, 중·고 1학년 (이에 준하는 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해당 연령의 1·4학년) *구강검진(초 전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 시력: 초 2·3·5·6학년 • 결핵: 고 2·3학년
방법	키, 몸무게 측정 (교직원 실시)	건강조사 설문지에 의한 조사 (교직원 실시)	검진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 학교방문검진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 시력: 교직원 또는 위탁 등 실시 • 결핵: 학교방문검진 (대한결핵협회)

※ 특수학교(28교)는 대한병원 및 서울특별시립장애인지과병원에서 출장검진 실시

※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검진 제외: 광성하늘빛학교, 누리학교, 수도사랑의학교, 효정학교

6) 일반검진·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고자료 23]

7)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참고자료 12]

8) 건강조사 설문지(서식) [참고자료 4~6]

다) 추진방법

(1) 학생 건강검사 계획 수립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되 누락학생이 없도록 조치(특히 전입생, 운동부 선수 등)
- 검진기관에 방문검진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을 위해 검진시기, 1일 검진인원 등을 조정·협의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 학교와 검진기관 사전 예약제, 방학 및 토요일을 이용한 검진으로 혼잡과 불친절 등의 불편 사항 해결

(2) 검진기관 선정

-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전산처리 등이 가능한 의과·구강 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 ※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검진기관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 다만, 학생 건강검사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간(’25년)까지 1개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 검진 허용
 -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제3호
 - 1개 검진기관 선정과 출장검진 등 학생 건강검진 방법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검진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교육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1개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6호)
 - 검진대상 각 학년의 학급이 3학급(학급당 26명 기준) 이하인 학교
 - 학교 소재(동 단위) 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적거나 없는 경우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3) 검진기관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검진준비, 검진항목 및 검진비용부담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 손해배상 이행,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사항 명기
-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반드시 확인(검진기관 검색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 [참고자료 23] 검진기관 지정기준 참조
- 검진기관 계약시 개인정보 위탁관리 준수사항 [참고자료 19, 20]
 - [사업시작]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용 게시(위탁업무 내용, 위탁업체명, 연락처 등)
 - [사업 중] 학교 단위 검진(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또는 검진기관 자체 교육이수결과 확인
 - ※ 교육사이트 안내: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개인수강) - 교육과정(공공 및 일반사업자) - 수료증 발급
 - [사업종료] 개인정보 파기 협약서 징구 [참고자료 21]

(4) 검진결과 처리

【 학교 】

- 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검진결과 긴급히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감염성질환(의심자 포함)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또는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사후관리 철저
 - ※ 감염성질환자(의심자 포함, 특히 결핵)일 경우에는 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 지침 중 “학교 내 결핵관리 체계” 철저히 준수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

- 검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보관하여 학생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 ※ 초등학교 2·3·5·6학년에 대한 구강검진결과도 동일하게 처리
- 학생 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철저

【 검진 기관 】

- 검진기관은 검사결과통보서에 검사결과, 종합소견, 조치사항, 검진일, 판정의사명, 검진기관명 등을 빠짐없이 기록
-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판정 구분 참고치를 적용
- 정밀검사 요함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⁹⁾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¹⁰⁾는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 학생 또는 보호자,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도 초1·4학년과 동일하게 처리
-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참고자료 19] 참고
-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제2장제6조제3항에 따라 5년간 보존

(5)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로 검진 비용 청구¹¹⁾
- 학교는 검진기관 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진 비용 지급

라) 검진기관 준수사항

-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일반검진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 검진 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9)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작성요령 [참고자료 13]

10)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요령 [참고자료 14]

11)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서식) [참고자료 16]

-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 관리 철저
-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 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데이터베이스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 ※ 검진기관 자격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적용

마) 검진비용(*1인당)

- 건강검진 소요예산은 법령에 의거 반드시 편성·시행
(단,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는 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 시 학교 자체예산 등으로 지원)

(1) 건강(구강)검진¹²⁾ (단위 : 원)

구분	초		중	고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8,680	18,680	28,240	28,240	○ 산정 기준 - 구강검진: 8,170원 - 결핵검사(중·고): 필름촬영금액
	비만		38,830	48,390	48,390	
여	정상		18,680	28,240	29,490	
	비만		38,830	48,390	49,6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2025. 1. 10. 「건강검진 실시기준」 수가 적용
 ※ 건강검진료는 결핵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반드시 확인

(2) 별도검사 (단위 : 원)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970	지방자치단체 지원 (※ 노원구, 서대문구는 학교예산으로 편성·지원)	4,290	

※ 소변검사 후 이상자는 병·의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시력검사: 별도 지원 없음(위탁실시할 경우 학교 자체예산 편성)

(3)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비예산

12)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참고자료 11]

바) 학생 건강검사 실시의 예외사항

- 해당연도 9월 이후 신설·재개교 학교로서 부득이한 경우로 해당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교육장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연도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를 생략하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필요 시 현장 지도·점검
 - 건강 검진비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 부당 청구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진비의 환수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등에 의거 강력 조치
- 나) 신체발달상황 NEIS 자료는 연도별로 다운로드하여 통계자료 보유
- 다) 학생 건강검사 관련 각종 보고사항 제출(보고목록표 참조)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가. 기본방침

- 1)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안내(’ 23. 12월)
 - 「제 2차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24 ~ ’ 28)」 수립 추진(’ 24. 2월)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2) 학교 예방교육 및 방역체계(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등) 구축 등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나. 추진방향

1) 학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강화

- 가)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단위의 학교감염병관리조직 편성·운영
 -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참고자료 35]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
- 나)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물품 확충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며, 자체 점검을 통해 물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충
 - ※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권장사업)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예산 확보

2)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지속 추진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 10시간 이상)
-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손씻기 운동 전개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감사를 가정통신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속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학교보건-‘감염병 예방’ 게시판 참고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법정의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정(2024.9.15.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교육 대상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3)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가) 서울시교육청 주관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세부 계획 추후 별도 안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습형 모의훈련 운영
 - 학교 내 집단 환자 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역량 강화

나) 학교 감염병 대응 자체 모의훈련

- 학교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응체계를 점검
 -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교재, 워크북 및 체크리스트 등 활용

4)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

- 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에 손 씻는 시설 확충하고, 특히 동절기에도 온수 공급으로 충분한 손 씻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개선
-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닦는 비품, 휴지 비치 및 개인 손수건 휴대하기 등

5)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가) 국가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학교보건법」 제10조)

나) 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NEIS)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별도 공문 안내)
- 초등학교는 만 11~12세 실시하는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일본 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중학교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나이스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미접종 학생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가 종료되기 전 나이스(학생건강기록부)에 접종 관련 기록 등 누락, 입력 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후 정정
- 외국에서의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 내역(예방접종 증명서)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미접종 학생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히 부작용 방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 방지 노력

※ 지원대상: 생후 6개월 ~ 만 13세 / 접종 기간: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6)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가)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증빙서류 》

- 법정 감염병 또는 확산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라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기재된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 보건안전진흥원 홈페이지 감염병 관련 출결관리 참고
- 이 외 「학교보건법」 제8조 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 따라 학교장이 등교 중지 시킬 경우 출석 인정 가능

나)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 및 관리 철저

- 학교는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보고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전송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보고서식 10>
 -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http://bogun.sen.go.kr>)의 감염병 발생 주간소식지* 적극 활용
 - * 감염병 발생 주간소식지: 학교 감염병 발생현황(NES 자료 통계분석), 역학정보, 예방대책 정보 등 제공
-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유행의심 상황 발생 시 감염병 발생 예·경보제 발령(SMS)
 - ▶ 발령기준: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특정 감염병 (의심)환자가 각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대상 감염병(11종):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결핵, 수족구병, 유행성결막염, 백일해, 성홍열, 뇌수막염, 신종·재출현 감염병
 - ※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유행주의보 발령 상태인 경우 별도 유행경보 미발령
- 집단으로 발병하였거나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감염병 협의체를 통해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 지역 내 감염병 발생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7) 학교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

- 학교 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감염병 담당자는 설명회 및 역학조사 참여
-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학생 중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예방교육 실시 권고(「2025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 협의)
- ▲ 이후 연 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 검사 필요 없음

- 학교 교직원 결핵검진 강화(「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참고자료 32] 결핵예방법령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 결핵 관련 각종 홍보·교육자료 활용
 - ※ 결핵 ZERO(<https://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 카드뉴스, 홍보자료, 교육자료

4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4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가. 기본방침

-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나. 추진방향

1) 함께 만들어 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

가) 학생 및 교직원의 담배제품 사용률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교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유도

나) 학교 내 자율적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강화

- 보건교사·생활지도교사·상담교사 등은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 청소년은 정기적인 상담, 외부기관(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지속 관리
- 교직원 연수, 학부모 교육 시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

다) 학교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금연시설) 관리 강화

-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¹³⁾·운영[참고자료 36]
- 학교장은 교내 흡연구역(흡연실) 설치를 금지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금연 환경 조성
- ※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제2020-601호, 2020. 12. 7.)
-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적용¹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과거('24.8.16.까지)	현재('24.8.17.부터)
지정 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024. 8. 17. 시행)

- 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교직원 대상] 학교 관계자(학교장, 교직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는 학교 내·외 금연구역에서 교직원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자체 점검, 민원, 신고 불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지도, 과태료 부과 등)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흡연위반 교직원은 금연 전문교육기관(금연클리닉 등)의 금연프로그램 이수
 - [외부인 대상] 금연구역 내에서 일반인 또는 학교 방문객 등 외부인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학교 관계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 [사전 안내]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교 방문객 등에게 강화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침에 대하여 사전 안내(학부모 대상 협조 안내문 등)
 - [민원 대응] 교직원 및 학교 방문객 등이 관할 보건소 통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설 운영자의 당연한 책무이며, 불법 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로써, 공직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제2020-601호, 2020. 12. 7.)
- 학생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 홍보 캠페인 전개
 - 금연구역 조기 정착, 금연실천 환경 조성
 - 금연구역 및 법규 준수사항 안내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홍보
 - 학교주변 자율 금연거리 조성 등
- 학교 주변 금연시설(금연구역)¹⁵⁾, 담배판매업소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실시
 - 자치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사 및 민간단체 등으로 감시단 구성
 - 학교 밀집 지역,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 등으로 월 1회 이상 감시단 활동
- 학교장은 학생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활동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금연 홍보 캠페인, 감시단 활동 등에 적극 협조
- 학교장 및 교육장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금연사업,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 등에 적극 지원·협조

1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2) 학교 내 체계적인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모든 학교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학교보건법」 제9조를 고려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계획 수립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10.16.)》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 및 학교장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한 교육 강화
-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 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 식약처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정이며, 우수 활동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
- 확대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에 맞춰 제작된 표준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교육 운영
-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 건강 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마약청정 대한민국(www.nodrugzone.mfds.go.kr) 교육자료 활용

※ 마약퇴치운동본부 학교급별 동영상, 교사 지도서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활용

나)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원격 직무연수 운영(중앙교육연수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등)

※ 담당 교원은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 연수(원격) 이수(‘23.12.18.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다)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서울시교육청, 법무부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예정

* 해당 교육 신청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라)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 학부모 대면 또는 비대면 연수 지원 예정(별도 안내 예정)

3) 보건실 의약품 관리 사항

- 가)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 부재 시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 보관기간 준수 등 관리 철저

4) 행정사항

- 교육지원청은 마약,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5

학생 시력 · 구강관리

5

학생 시력 · 구강관리

가. 기본방침

- 시력 보호를 위한 기준 조도(교실 300Lux이상) 확보, 조명, 채광 유지 · 관리로 적정 학습 환경 조성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점심식사 후 양치 실천을 통해 구강 건강증진 도모

나. 추진방향

1) 학생 시력관리 강화

가) 학생 시력 저하 예방교육 강화

- ▶ 올바른 독서법, 스마트폰, 컴퓨터 · TV 시청 지도, 올바른 안경 사용방법, 컴퓨터 전자파로 인한 VDT증후군¹⁶⁾ 예방대책 등 학교와 가정에서 근시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실시

나) 교실 내 적정 조도 관리 방안 강구

- 자연조명의 경우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커튼, 버티컬 블라인드 등 보완책 강구
- 인공조명의 경우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Lux 이상 유지하고,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다) 학생건강검사 결과, 시력 교정대상 · 교정학생 시력 관리 강화

- 고도근시 · 저시력 · 기타 안과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과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안내
- 고도근시 학생의 경우 과중한 운동금지(망막박리로 인한 실명의 원인 제공)
- 저시력 학생(교정시력 0.04~0.3)에 대한 학습지도 대책 및 특수교육 연계

16)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TV, 비디오 게임기, 컴퓨터 등을 장기간 사용, 반복적 키보드사용, 적절치 않은 조명, 좋지 않은 자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눈의 장애, 두통, 목, 어깨, 손,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적 증후군

라)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운영(보건안전진흥원): 2025. 3 ~ 11월

※ 2025년도 세부계획은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2) 학생 구강관리 강화

가) 양치 실천율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화

-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식사 후 칫솔질 의 중요성 교육 실시
- 학교 단위 칫솔질 실천 캠페인 전개를 통한 개인 양치도구 지참과 양치습관 생활화 분위기 확산
- 자치구 보건소 등 검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강보건사업(치과주치의 사업 등) 전개

※ 기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 (별도 공문 시행)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양치시설(수도시설) 확충(복도, 화장실 등)

※ 2013년도부터 서울특별시의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사업 지원 중단으로 학교자체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사업)협조 요청 등을 통해 세면시설 추진 노력

나) 찾아가는 구강 건강교실 운영(보건안전진흥원): 2025. 3 ~ 11월

※ 2025년도 세부계획은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6

요보호학생 관리

6

요보호학생 관리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관리

가. 기본방침

-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복지 향상에 노력
-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명량한 학교생활 영위 및 안정화 추진

나. 추진방향

1)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 2025년도 세부계획은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2) 의료비 지원(이주학생)

- 의료사각지대 미등록 이주학생 발굴 및 의료비 지원
 - ※ 2025년도 세부계획은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3) 심장질환 학생 관리

- 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심장질환 학생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수술, 시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며, 각급 학교의 대상자 파악 및 검사 안내
-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검진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수술·시술 추진

□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 관리

가. 기본방침

- 당뇨병(1형, 2형)*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 제1형 당뇨는 자가면역,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가 원인으로 주로 사춘기 이전 저연령에서 발병, 제2형 당뇨는 유전적 경향이 강하며 비만, 노화, 스트레스 등에 의해 진행되어 사춘기 이후 40대 이후 중년기에서 주로 발병
-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시행

나. 현황

-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 가능(「학교보건법」제15조의2)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교육부, 2019. 9. 23.)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7432호, 2020. 1. 9.)

다. 추진방향

1) 소아·청소년 당뇨(제1형, 제2형) 학생 재학 현황 파악

- [학교]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당뇨 학생 재학 여부 조사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리체계 및 지원계획 수립
 - ※ 보호자가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및 당뇨병 관리물품 제출
- [교육청]학교에서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당뇨 학생 지원방안 마련
 - 응급관리 물품 확충 및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별도 공문 시행)
 -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응급대처 역량강화 연수 추진 (별도 공문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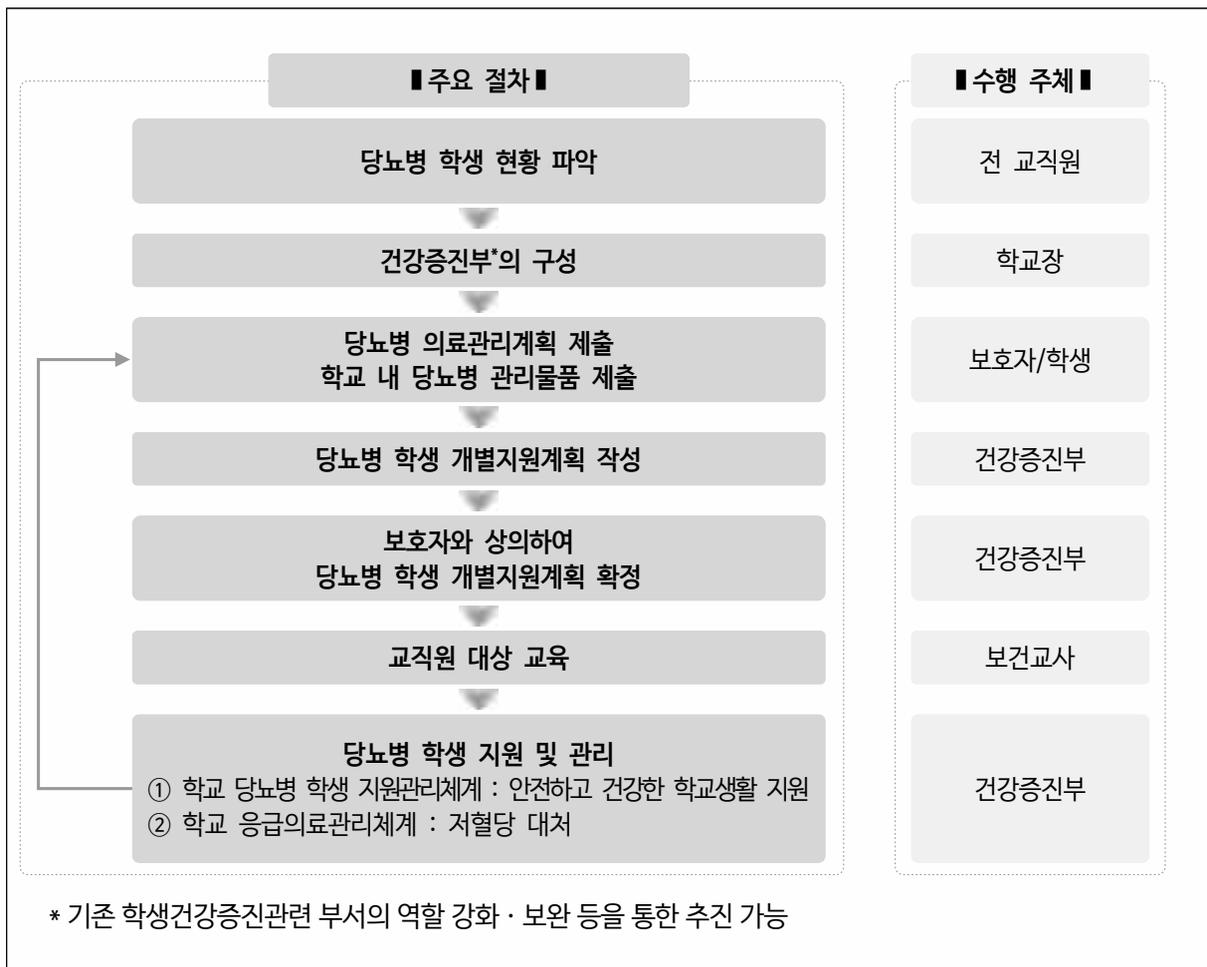
2) 소아·청소년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구축

-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건강증진부 역할》

-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작성·이행
-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
- 당뇨병 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 및 소통(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
- 당뇨병 학생에 대한 존중 및 기밀유지, 프라이버시 권리 존중

- 당뇨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 보건실 등 안전한 공간을 투약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 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응급의약품과 비상관리물품을 보관할 장소 확보 및 시설 개선
 -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응급관리물품 구입 비치
- 학교의 효과적 당뇨 학생 지원관리 개요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가.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나.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3월 31일까지)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가능

* 예시: 간호사 면허소지자,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등

다. 추진방향

1)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2)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
 - *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보건안전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심폐소생술 학생 교육자료 적극 활용
 - ※ 서울특별시교육정보건강안전진흥원(<https://bogun.sen.go.kr>) > 자료실 > 교육자료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2025. 2월 중 배부 예정)

8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8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가. 기본방침

-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서울교육 발전과 주요 정책 추진 성과가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학교보건 정책의 발전과 관계자의 사기 진작

나. 추진방향

1) 학교보건 유공교(자) 표창 훈격

- 교육부장관 표창
 - 보건, 교육환경, 학교주변 유해시설 합동단속,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 학교기반 정신건강 대책추진 유공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 표창
 - 보건의 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흡연예방 유공
-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
 -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흡연예방 유공 등

2) 표창 일정

- 교육부장관: 2025. 10 ~ 11월 추천, 12월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감: 2025. 10 ~ 11월 추천, 12월 수여

3) 표창기준(당해년도 표창 계획 공문으로 안내)

- 보건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내실화 추진
- 학생 참여중심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건강증진교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혁신적 운영
- 건강검사 결과분석 활용 및 객관적 건강지표에 근거한 학생 건강관리
- 학생의 건강한 보건의행태 유발 및 비만예방과 흡연, 음주 등 불건전한 건강행태 개선 추진

- 감염병 예방 관리 선제적 대응·추진
- 생활 속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 기타 특색있는 학생 건강증진활동 등

4) 처리 절차

- [학교] 추천 → [교육지원청] 공적심사 → 교육(부)청 공적심사위원회 → 최종 확정
- ※ 2025년도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세부추진 계획은 별도 공문으로 시행

9

보고목록 및 기관(부서)별 역할

9 보고목록 및 기관(부서)별 역할

□ 보고 목록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작성기관)	보고처	보고서식	보고방법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2025. 12. 19.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1	NEIS보고
	2025. 12. 26.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5. 12. 19.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12. 26.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2025. 12. 19.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3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12. 26.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소변검사 추진 현황	2025. 12. 19.	한국학교보건협회, 한국건강지원협회	시교육청	서식 4	서면보고
학생 결핵검사 추진 현황	2025. 12. 19.	대한결핵협회	시교육청	서식 5	서면보고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2025. 12. 19.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6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12. 26.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보건교육 실시 현황	2025. 12. 19.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7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12. 26.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2025. 12. 12.	유·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8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12. 19.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5. 4. 11.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9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4. 18.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025. 4. 18.	초·중·고	교육지원청	서식 10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5. 4. 25.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감염병 발생 현황	발생 즉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NEIS보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보고사항 발생 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식 11	서면보고 (전자문서)

※ 각급학교(NEIS 전송/자료집계시스템) → 교육지원청(NEIS 전송/서면보고) → 서울시교육청

□ 기관(부서)별 역할

구 분	협조(추진) 내용	기관(부서)명	비고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신·개·증축학교 설계 시 보건실 적정 규모 확보, 시설 및 기구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보건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 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 ◦ 각급학교 	
	보건실 현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 보건안전진흥원 	
교내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매년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기관별 자체연수 운영가능
학생 시력·구강관리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운영	◦ 보건안전진흥원	
	찾아가는 구강 건강교실 운영	◦ 보건안전진흥원	
요보호학생 관리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보건안전진흥원	
	의료사각지대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심장질환 학생 지원	◦ 보건안전진흥원	

서식 1(학교용)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00학교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정 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과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비 만 (%)	남자	()	()	()	()	()
		여자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 NEIS 보고기한: 2025. 12. 19.

서식 1(교육지원청용)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00교육지원청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정 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과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비 만 (%)	남자	()	()	()	()	()	
	여자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 NEIS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2(학교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학교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 소요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등학교의 경우, 1·4학년)

2.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명, 천원)

학년	전체 학생수 (2·3·5·6학년)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2·3·5·6학년, 소요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검사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한 경우에만 작성. 한국학교보건협회, 한국건강지원협회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미작성)
- 시력: 초 2·3·5·6학년

■ 보고기한: 2025. 12. 19.

서식 2(교육지원청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특수학교)

2.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2·3·5·6학년)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3.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중·고등학교), 검사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한 경우에만 작성. 한국학교보건협회, 한국건강지원협회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미작성)
- 시력: 초 2·3·5·6학년

■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3(학교용)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년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교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근·골격 및 척추									
	시력								
귀	교정 대상 교정한 학생수								
	안 질 환 청력 장애								
구강	잇몸 병								
	치주 질환								
혈압	고혈압								
	요단백								
소변	요삼혈								
	검사인원								
각종 검사	혈액 (I)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검사인원								
혈액 (II)	혈색소								
흉부 방사선	결핵								
	검사인원								

※ 제출처 : 교육지원청

※ 작성방법[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검사인원수 기재 요망]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만 기재
2. 시력 교정대상 : 안경(콘택트렌즈) 미착용학생 중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70이하인 학생수 기재
3. 시력 교정한 학생수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한 학생 기입(안경착용 후의 시력이 0.70이하인 학생도 포함)
4. 남, 여별로 각각 작성

■ 보고기한 : 2025. 12. 19.

서식 3(교육지원청용)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년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기관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근·골격 및 척추									
시력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수								
귀	안질환								
	청력장애								
콧병	콧병								
	목병								
구강	피부병								
	충치								
	치주질환 부정교합								
혈압	고혈압								
	소변								
소변	요단백								
	요감혈								
각종 검사	혈액 (I)	검사인원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혈액 (II)	검사인원							
		혈색소							
		검사인원							
흉부 방사선	결핵								
	검사인원								

※ 제출처 : 시교육청

※ 작성방법[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검사인원수 기재 요망]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만 기재
2. 시력 교정대상 : 안경(콘택트렌즈) 미착용학생 중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 기재
3. 시력 교정한 학생수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한 학생 기입(안경착용 후의 시력이 0.7이하인 학생도 포함)
4. 남, 여별, 남녀합계별로 각각 작성
* 기타학교는 해당 학교급에 포함

■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4

학생 소변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협회

□ 학생 소변 별도검사 현황(총괄표, 자치구별 작성)

(단위 : 명)

학교 급별	지정 학년별	성별	검사 대상자수	검사 자수 (A)	소변 검사 결과							검사 학교 수	비고
					정상 (B)	단백 양성 (C)	당 양성 (D)	혈뇨 (잠혈) 양성 (E)	단백/당 /잠혈 동시양성 (F)	기타 소견 (G)	계 (H)		
초	2	남											
		여											
	3	남											
		여											
	5	남											
		여											
	6	남											
		여											
	소계	남											
		여											
중	2	남											
		여											
	3	남											
		여											
	소계	남											
		여											
고	2	남											
		여											
	3	남											
		여											
	소계	남											
		여											
합계		남											
		여											
		계											

■ 보고기한: 2025. 12. 19.

서식 5

학생 결핵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협회

□ 학생 결핵 별도검사 현황(총괄표, 자치구별 작성)

(단위 : 명, 교, 천원)

학교 급별	지 정 학년별	성별	검 사 대상자 수	검사 자수 (A)	결 핵 검 사 결 과							검사 학교수	비고
					정상 (B)	활동성 (C)	비 활동성 (D)	활동성 미정 (E)	의사 결핵 (F)	기타 (G)	계 (H)		
고	2학년	남											
		여											
		계											
	3학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보고사항

* 소변검사 및 결핵검사 현황은 해당기관에서 각각 통계를 처리하여 서식 (4-1) 및 (4-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고생략

■ 보고기한: 2025. 12. 19.

서식 6(학교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학교

1. 교육 실시 현황

학교급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 X)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교안전교육 교육 실적 포함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명	마약류 단독 주제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보고기한: 2025. 12. 19.

서식 6(교육지원청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1. 교육 실시 현황(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마약류 단독주제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 수 (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 수 (교)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7(학교용)

보건교육 실시 현황

○○학교

1. 교육 실시 현황(단위: 교)

학교급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여부 (O,X)	보건교육 실시 현황							2025학년도 보건과목 선택 여부 (O,X) *초등학교 제외	2026학년도 보건과목 선택 여부 (O,X) *초등학교 제외	비고
			학년단위 학급당 연평균 수업 시수 *시수 작성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여부 (O,X)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7(교육지원청용)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1.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교)

학교급 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16차시 이상

※ 보건교육 현황: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 보고기한: 2025. 12. 26.

서식 8(학교용)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학교

1. 교육 현황

(단위 : 교)

심폐소생술 교육(해당란에 ○표) ※ 중복표기 가능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외부기관 위탁 실시

2.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명)

교육대상 인원 ¹⁾	교육이수 인원 ²⁾	미이수 인원	교육 미이수 사유

1)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이 미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에서 제외

3. 학교내 자체교육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한 경우(해당란에 ○표)					
학교 내부 강사활용			외부기관 강사 초빙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4.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한 경우(해당란에 ○표)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타 (민간기관 등)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보고기한 : 2025. 12. 12.

서식 8(교육지원청용)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1. 전체 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E)=(A+B+C+D)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A)	외부기관 위탁(B)	병행(C)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2.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A+B+C)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D)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 1)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이 미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에서 제외

3. 학교내 자체교육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교)

구분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 수 (A+C)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4.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교)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B+C)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타 (민간기관 등)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보고기한 : 2025. 12. 19.

서식 9(학교용)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5. 4. 1. 기준)

기관명 : ○○학교

1. 재학 현황

(단위: 명)

급별	학교명	당뇨병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수	비고
		제1형 당뇨병 학생수	제2형 당뇨병 학생수		

* 보건교사: 기간제 교사, 2인 배치 포함

2. 학교 지원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명)

구분	지원현황					
	직접 주사	주사 지도	투약 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계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지도: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 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보고기한 : 2025. 4. 11.

서식 9(교육지원청용)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5. 4. 1. 기준)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재학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제1형 당뇨병 학생		제2형 당뇨병 학생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당뇨병 학생 현황

2. 학교 지원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명)

유형	지원항목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제1형 당노	직접 주사						
	주사 지도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제2형 당노	직접 주사						
	주사 지도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지도: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보고기한: 2025. 4. 18.

서식 10(학교용)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5. 4. 1. 기준)

○○학교

1. 희귀난치성 질환 (단위: 명)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비고: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2. 석션(기도흡인) (단위: 명)

석션(기도흡인)				
석션(기도흡인) 필요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비고: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3. 인공도뇨 (단위: 명)

인공도뇨				
인공도뇨 필요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비고: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 보고기한: 2025. 4. 18.

서식 10(교육지원청용)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5. 4. 1. 기준)

○○교육지원청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교, 명)

학교급	전체 학교수	재학 학교수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석션 (기도흡인)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인공도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보고기한 : 2025. 4. 25.

서식 11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5. 00. 00.(), 00학교/00교육지원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방법: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24.11.11.	백일해	1	학생	2-1(1)	'24.11.12.	'24.11.12.	'24.11.25.
'24.11.13	결핵	1	교원	2-1 담임(1)	해당없음	'24.11.15.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해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초차/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 (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 인원		
24.11.14.	최초	학생	6-5	23	백일해 1명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교직원	6-5 담임	3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10

참고자료

10

참고자료

순	참고자료명	비고
1	문진표(초등학생용)	
2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3	구강검진 문진표	
4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5	건강조사 설문지(중학생용)	
6	건강조사 설문지(고등학생용)	
7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10	검진항목별 판정 구분 참고치	
11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12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13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14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15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서식	
1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17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서식	
18	검진 인력 현황	
19	학생 건강검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	(학교 실시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예시)	
21	개인정보 파기 협약서(예시)	
2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위탁사항 공개(학교홈페이지 게시용)	
23	검진기관 지정 기준	

10 학교보건 분야

순	참고자료명	비고
24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25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26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및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27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28	학교 교구·설비기준(학교 보건실)	
29	감염병 관련 규정	
30	법정 감염병의 종류	
31	학교 결핵 환자 발생 관리 서식	
32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33	결핵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서식)	
34	평상 시 감염병 대응 흐름도	
35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36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 방법	
3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참고자료 1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참고자료 2

문진표(중·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생년월일	
	성명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순환기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액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몸에 멍이 잘 든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참고자료 3

구강검진 문진표

<p>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 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3. 치아가 썩히고 육신거리고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육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 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구강검진 문진표

참고자료 4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귀댁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파악과, 우리학교의 학교보건 방향 수립 및 추진의 기초 자료를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가.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1. 예방접종/ 병력	나. 개인병력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 진 료를 받았습니까?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기타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 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 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 만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예 아니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자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뛴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친구가 언어적, 신체적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같이 사는 사람 중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항상 외롭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존중에 유의

참고자료 5

건강조사 설문지【중학생용】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1. 예방접종/ 병력	가. 가족병력 (친·인척 뿐아 니라 함께 거주 하는 사람도 포함)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 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나. 개인병력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 찰중 등)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 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 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 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만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기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 3회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뒹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주시고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 존중에 유의

참고자료 6

건강조사 설문지【고등학생용】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가족병력 (친·인척뿐아 니라 함께 거주 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나. 개인병력	구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지난 1년 동안 질 병을 앓았거나 병 원진료를 받았습 니까?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 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 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 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만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 3회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땀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임법,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학교성적과 학습량의 과중(학원, 과외수업, 숙제 등) ② 외모(얼굴, 몸무게, 키 등) ③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 ④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주시고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 존중에 유의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결 핵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교 정	좌: 우: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간 세포 효소	AST	U/L	
	귓 병					ALT	U/L		
콧 병						혈 색 소	g/dL		
목 병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mm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mm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참고자료 8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반/번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중·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고등학교 추가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틈)형성() 그 밖의 증상()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 함)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 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 사 명	(인)		검진기관명	

참고자료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하게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측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3. 귀	가. 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코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p>가. 치아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p>나. 구강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p>가. 소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p>나. 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p>다. 결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p>라. 혈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측정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측정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신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 (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자료 10

검진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

(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판정기준
정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2.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귀	청력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빈혈증 질환	혈색소 - 여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 2+, 3+, 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 2+, 3+, 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콜레스테롤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혈압판정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 도표에서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해야 함

참고자료 11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별표 2]

검사항목	검진수가 (단위: 원)		초		중		고		검사방법(세부항목)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 척추			○	○	○	○	○	○	척추염·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2-1. 시력 측정	9,590 (기본검진)	○	○	○	○	○	○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 왼쪽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2-2. 안질환		○	○	○	○	○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3-1. 청력		○	○	○	○	○	○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3-2. 귓병		○	○	○	○	○	○	중이염, 바깥귀질환(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		○	○	○	○	○	○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		○	○	○	○	○	○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 및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		○	○	○	○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7-1. 치아상태		8,170	○	○	○	○	○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 검사
	7-2. 구강상태			○	○	○	○	○	○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8-1. 소변	920	○	○	○	○	○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8-2. 혈액	혈당	1,590		○	○	○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가.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간 세포 효소(AST·ALT) 나. (여)고등학생 : 혈색소	
		총콜레스테롤	1,890		○	○	○	○		
		HDL	7,650		○	○	○	○		
		중성지방	4,510		○	○	○	○		
		LDL	-		○	○	○	○		
		AST	2,280		○	○	○	○		
		ALT	2,230		○	○	○	○		
	혈색소	1,250					○			
	8-3. 결핵	직접촬영(14"×14")	9,560				○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CR 또는 DR		8,170								
Full PACS		9,120								
8-4. 혈압	기본검진		○	○	○	○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비만학생)	기본검진			○	○	○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인당 검진비용(단위 : 원) ○ 산정 기준 - 결핵검사: 직접촬영 수가	남학생	정상	18,680	18,680	28,240	28,240	28,240	○ 적용기준 · 검진수가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2025. 1. 10.) · 건강검진 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지원부-273호, 2025. 1. 15.)		
		비만		38,830	48,390	48,390				
	여학생	정상		18,680	28,240	29,490				
		비만		38,830	48,390	49,640				

- * 비만학생 검사항목 중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의 경우 자동 산출 가능(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미만일 때)
 ▶ 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안내
- * 결핵CR: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 중·고 결핵 검사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 별도검사 비용: 구강검진(8,170원), 소변검사(970원), 결핵검사(4,290원)

참고자료 12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 ^o dy Mass Index: kg/m ²)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교: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13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골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HDL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LDL (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14

학생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충치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충치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2. 충치발생 위험치아	상 동
3.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상 동
4.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5. 부정교합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교정필요' - '교정 중'
6. 구강 위생 상태	위생 상태에 따라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7. 그 밖의 치아 상태	치아 상태에 따라 - '과잉치' - '유치잔존' - 그 밖의 치아 상태 기재
8. 치주질환(잇몸병)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잇몸출혈/비대', '치석형성', '치주낭형성'에 표기하고 그 밖의 증상 기재
9. 턱관절 이상	이상 유·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10. 치아마모증	상 동
11. 제3대구치(사랑니)	정상 여부에 따라 - '정상' - 이상이 일 때 기재
12.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결과 및 문진결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담당 의사가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기재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실시

참고자료 15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서식 (예시)

〈만족도 조사 서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활용 가능〉

조사 일자 : 20 . . . ()

학 교 명 : ○ ○ 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의원
1-2	○○의원		2-2 ○○치과병원
1-3	○○병원		2-3 ○○치과의원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 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대기자로 인해 긴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검진 시간표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청구처 (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기본진료)				
구 강 검 진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 검사	혈액 (I)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AST		
		ALT		
	혈액 (II)	혈색소		
흉부 방사선검사	직접촬영(14"x14")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건
2.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건
3. 건강검진통계표 건

참고자료 17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17)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서식(예시)

학생 검진기관으로써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사.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5년간 보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고자료 18

검진 인력 현황

1. 검진기관명 : (직인)

2. 검진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의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치 과 위 생 사	임 상 병 리 사	방 사 선 사	원 무 행 정 요 원
	소 계	일 반 의	전 문 의								치 과 의 사						
			내 과	소 아 청 소 년 과	일 반 외 과	가 정 의 학 과	산 부 인 과	산 업 의 학 과	진 단 검 사 의 학 과	영 상 의 학 과							
전체 인력																	
검진담당인력																	

※ 검진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하되 위 가. 현황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참고자료 19

학생건강검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학교 → 건강검진병원)
- * 위탁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학교)
- *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건강검진병원)

○ ○ 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계약 시 고시번호가 최신인지 확인 필요)*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건강검진 실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건강검진 진행을 위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학생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및 통계 자료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¹⁸⁾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1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실시용]¹⁹⁾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교육자료(예시)

○○ 학교

학생건강검진 업무 위탁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20

○ 교육대상(업체 직원)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 병원			

○ 교육내용 :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19) 개별학교에서 검진(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직접 실시할 때 위 서식을 활용가능. 다만, 검진기관 자체 개인정보 동영상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같음이 가능함.

※ 공공 및 일반사업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사이트 안내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교육-온라인교육(개인수강)-교육과정(사업자) 이수-이수증발급

1 개인정보의 정의 및 원칙

□ 개인정보의 정의(법 제2조)

- “개인정보”란 ①살아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④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의 종류 -

유형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등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 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등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사업소득 등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융자 및 납입현황, 저당, 신용카드,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훈련기록, 직무수행평가기록, 근태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
법적정보	전과기록,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등
조직정보	종교단체 가입, 클럽회원 등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내용 등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독서성향 등

□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법 제3조)

- ① 명확한 목적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② 처리 목적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③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④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⑤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및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⑦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 ⑧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2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성 점검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참고자료 2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위탁사항 공개
[학교 홈페이지 게시용]

학교명	병원명 (소재지)	위탁내용	병원연락처
(예시) ○○ 학교	○○ 병원 (서울 ○○구)	학생 구강검진 진행을 위한 학생 개인 정보 수집(이름, 주소, 연락처 등),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및 통계자료 관리	02-000 -0000
	○○ 치과 (서울 ○○구)	학생 구강검진 진행을 위한 학생 개인 정보 수집(이름, 주소, 연락처 등),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및 통계자료 관리	

참고자료 23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 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 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화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19. 9. 27.

□ 구강 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2013. 3. 23.부터 적용사항

참고자료 24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2017)

◎ 체질량지수 : 남아(6~17세)

(단위: kg/m²)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3.7	13.9	14.3	14.6	15.1	16.0	17.0	17.6	18.1	18.8	19.2	20.2
7(초2)	13.7	14.0	14.5	14.8	15.3	16.4	17.6	18.3	18.8	19.6	20.2	21.4
8(초3)	13.8	14.2	14.7	15.1	15.7	16.9	18.3	19.2	19.8	20.7	21.4	22.8
9(초4)	14.0	14.4	15.1	15.5	16.2	17.6	19.2	20.2	20.9	22.0	22.7	24.2
10(초5)	14.3	14.7	15.5	16.0	16.8	18.4	20.2	21.2	22.0	23.1	23.9	25.5
11(초6)	14.6	15.1	15.9	16.5	17.4	19.1	21.1	22.2	23.0	24.2	25.0	26.7
12(중1)	15.0	15.5	16.4	17.0	17.9	19.8	21.8	23.0	23.8	25.1	25.9	27.6
13(중2)	15.5	16.0	16.9	17.5	18.4	20.3	22.4	23.6	24.4	25.7	26.5	28.2
14(중3)	16.0	16.5	17.4	18.0	18.9	20.8	22.8	23.9	24.8	26.0	26.9	28.5
15(고1)	16.5	17.0	17.9	18.5	19.4	21.2	23.1	24.2	25.0	26.2	27.0	28.6
16(고2)	17.0	17.5	18.3	18.9	19.8	21.6	23.5	24.5	25.3	26.4	27.2	28.7
17(고3)	17.4	17.9	18.7	19.3	20.2	21.9	23.8	24.8	25.5	26.6	27.4	28.8

◎ 체질량지수 : 여아(6~17세)

(단위: kg/m²)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3.4	13.7	14.1	14.4	14.8	15.8	16.9	17.5	18.0	18.7	19.2	20.3
7(초2)	13.4	13.7	14.2	14.5	15.0	16.1	17.3	18.1	18.6	19.5	20.1	21.4
8(초3)	13.5	13.8	14.4	14.8	15.3	16.6	18.0	18.8	19.5	20.4	21.1	22.5
9(초4)	13.7	14.1	14.7	15.1	15.8	17.2	18.8	19.7	20.4	21.5	22.2	23.7
10(초5)	14.0	14.4	15.1	15.5	16.3	17.8	19.5	20.6	21.3	22.4	23.2	24.8
11(초6)	14.3	14.8	15.5	16.0	16.8	18.5	20.3	21.4	22.1	23.3	24.2	25.8
12(중1)	14.8	15.3	16.0	16.6	17.4	19.1	21.0	22.1	22.9	24.1	25.0	26.7
13(중2)	15.4	15.9	16.6	17.2	18.0	19.7	21.6	22.8	23.5	24.8	25.6	27.3
14(중3)	15.9	16.4	17.2	17.8	18.6	20.3	22.2	23.3	24.0	25.2	26.0	27.6
15(고1)	16.4	16.9	17.7	18.3	19.1	20.8	22.6	23.6	24.3	25.4	26.2	27.7
16(고2)	16.8	17.3	18.1	18.6	19.4	21.0	22.8	23.8	24.5	25.5	26.3	27.7
17(고3)	17.0	17.5	18.2	18.7	19.5	21.1	22.8	23.8	24.5	25.5	26.2	27.7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2017) 정상 과체중 비만

참고자료 25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 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참고자료 26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및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9판, 안효섭편, 2007

참고자료 27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교육부 훈령 제425호(2022. 12. 26.)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1. 학생건강검사기록 중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
 -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
2. 재학생, 전입학·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졸업생 포함)

구분	이관(보관) 자료	방 법
초·중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전송) 및 출력물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교무업무시스템)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전·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4조제4항)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 고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2년간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3. 미 진학, 휴학, 퇴학 등의 경우
 - 교무업무시스템의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및 종전 건강기록부는 해당 학교에서 5년간 보관
4.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및 건강조사 설문지 관리방법

구분	보관방법	전출 시	전입 시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건강조사설문지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및 건강조사 설문지는 서울시 교육청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원본을 5년간 해당학교에 보관 후 폐기	보내지 않음	받는 서류 없음	이관하지 않음

※ 기록물의 원본이 종이 아닌 전자파일로 생성되는 경우, 내부결재를 득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가능

참고자료 28

학교 교구·설비기준 (학교 보건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 및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44호, 2022. 7. 21.]

영역	설비종목	규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1. 일반 시설 및 기구	1. 사무용 책상·의자	적정규격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2. 건강기록부 및 서류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3. 약품 및 의리기구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4. 소독(멸균)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5. (냉동)냉장고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6. 수도시설 및 세면대(싱크대)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7. 냉·난방시설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8. 전화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9. 컴퓨터·프린터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0. 온·습도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1. 순간온수기(온수설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2. 핸드타월(드라이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3. 가습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권장
	14. 화이트보드(게시판)		초·중·고·특수	학교당 1	권장
	15. TV, VCR(DVD)		초·중·고·특수	학교당 1	권장
	16. 물끓이는 기구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17. 스탠드라이트		초·중·고·특수		권장
	18. 세족기(샤워기 부착)		초·중·고·특수		권장
	19. 적외선 램프		초·중·고·특수		권장
	20. 진공청소기		초·중·고·특수		권장
	21. 온장고(레인지)		초·중·고·특수		권장
	22.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초·중·고·특수		권장
	23.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초·중·고·특수		권장
2. 환자 안정용 기구	1. 침대		초·중·고·특수	초·특수 2조 이상, 중·고 4조 이상	필수
	2. 침구류(침대커버, 이불, 베게)		초·중·고·특수	초·특수 4조 이상, 중·고 8조 이상	필수
	3. 침구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4. 칸막이(파티션)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5. 보온기구(전기요 등)		초·중·고·특수	학교당 1	권장
3. 건강 진단 및 상담용기구	1. 신장계, 체중계	적정규격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필수
	2. 비만측정기(신장, 체중 자동측정)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3. 전기시력표, 눈가리개, 시력검사용 지시봉		초·중·고·특수	6학급당 1	필수
	4. 혈압계, 청진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5. 펜라이트(인후 후레쉬)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6. 상담용 의자·탁자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7. 진찰용의자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8. 체온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영역	설비종목	규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9. 줄자, 좌고계	적정규격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권장	
	10. 색각검사표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권장	
	11. 청력계	헤드폰사용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권장	
	12. 혈당측정기		초·중·고·특수		권장	
	13. 스톱워치		초·중·고·특수		권장	
	14. 검안경, 검이경, 비경		초·중·고·특수		권장	
	15. 치과용 거울, 탐침		초·중·고·특수		권장	
	16. 척추측만증 측정자(각도기)		초·중·고·특수		권장	
	17. 소아용 혈압계		초·중·고·특수		권장	
	4. 응급 처치용 기구	1. 핀셋, 핀셋통		초·중·고·특수	학교당 2조	필수
		2. 의료용 가위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3. 농반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4. 거즈통(드레싱캔, 스폰지캔)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5. 드레싱카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6. 부목		초·중·고·특수	학교당 대중소 4조 이상	필수
		7. 구급낭(휴대용 구급기구)		초·중·고·특수	학년당 1 이상	필수
		8. 들것		초·중·고·특수	학교당 1 이상	필수
9. (냉·온) 찜질기(팩)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10. 구급처치용 침대(진찰대)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1. 소독접시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12. 목발			초·중·고·특수		권장	
13. 세안수수기			초·중·고·특수		권장	
14. 켈리(지혈감자)			초·중·고·특수		권장	
15. 휴대용산소기			초·중·고·특수		권장	
16. 경추보호대			초·중·고·특수		권장	
17. 비염세정기			초·중·고·특수		권장	
18. 휠체어			초·중·고·특수		권장	
5. 보건 교육용 기구	1. 성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학교당 2가지 이상	필수	
	2. 흡연예방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3. 교육기자재 보관장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4. 안전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권장	
	5. 구강(치아) 모형		초·중·고·특수		권장	
	6.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초·중·고·특수		권장	
	7. 기타 태아모형 등 보건교육 교구		초·중·고·특수		권장	
6.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용품	여성용품(생리대)		초·중·고·특수		필수	
7.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초·중·고·특수		권장	

감염병 관련 규정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8. 3. 27., 2020. 12. 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역학조사)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의 인적 사항
 -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략)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이 포함된 감염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2.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24. 9.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횟수 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비고
	4~9월까지	10~3월까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만 해당한다)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20. 10. 20.>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9. 24., 2022. 3. 22.>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신설 2019. 9. 24., 2022. 3. 22., 2022. 8. 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477호, 2024. 2. 8 일부개정)(시행 2024 3. 1.)**

제8조(출결상황)

-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 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 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참고자료 30

법정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시행 2023. 8. 8.]

구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제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선천성, 후천성) 13. 폴리오 14. 수막구균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종 (CRE)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쯤쯤가무시증 11. 렘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중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규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보염 23. 유비저 24. 차쿰구니아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7. 매독 28. 엠폭스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참규곤달름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참고자료 31

학교 결핵 환자 발생 관리 서식

[학교 ⇒ 보건소]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통보(신고 서식)

수신 : ○○ 보건소장

발신 : ○○ 학교장

보고 일시 _____ 보고자 _____

이름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학교 비치용]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주소	발견 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완치 여부	비고

* 발견근거 :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가 기록

[보건소 ⇒ 학교]

학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수신 : ○○ 학교장

발신 : ○○ 보건소장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도말결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치료 결과	비고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 시 송부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출처: 2024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교직원 대상 결핵검진 관련 법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2022. 7. 1. 개정·시행)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 등이 포함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고, 채용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립학교 교비회계 2025학년도 예산 및 2024학년도 결산지침」에 의거 학교 교직원 결핵(잠복결핵) 검진 소요예산을 학교운영비에서 편성·지원할 수 있음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결핵예방법」 제11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A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Q A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설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Q A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 검진 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같음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 (참고) 「결핵 진료지침」(4판, 2020)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6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같음한다면 어떻게 검진 실시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전 치료·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면역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7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대표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8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 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1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결핵예방법」 제34조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4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 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자료 33

결핵 예방 안내 <small>(예시)</small>	제10- 호
	00 학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어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결핵(Tuberculosis)이란?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폐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뼈나 관절, 뇌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2 결핵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결핵은 주로 결핵을 가진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학생의 건강을 위해 2주간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3 결핵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전신적인 무력감, 체중감소, 열, 밤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침, 객혈(가래에 피가 섞임), 흉통 등의 증상이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는 기침, 경도의 호흡곤란 및 미열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4 결핵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내과적 치료가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6개월간 아침 7시 공복에 약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5 결핵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BCG 예방접종을 통해 결핵 예방

- 1)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2) 접종시기 : 생후 4주 이내

● 면역력 높이기

“불규칙한 식사 등 영양환경이 빈약하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 활동을 즐기는 10/20대가 결핵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가 결핵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환기를 자주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 환기 자주 하기

결핵은 결핵균을 가진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합니다. 특히 환자가 있는 곳에는 더욱 자주 환기를 시켜 결핵균의 밀도를 낮추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결핵약 예방 투여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피부반응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 판단에 의해서 결핵약을 발병 예방 목적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투약합니다.

6 등교중지 안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등교 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등교중지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 ◆ 「학교보건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 ◆ 교육부훈령 제393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별표 제8호의 2번 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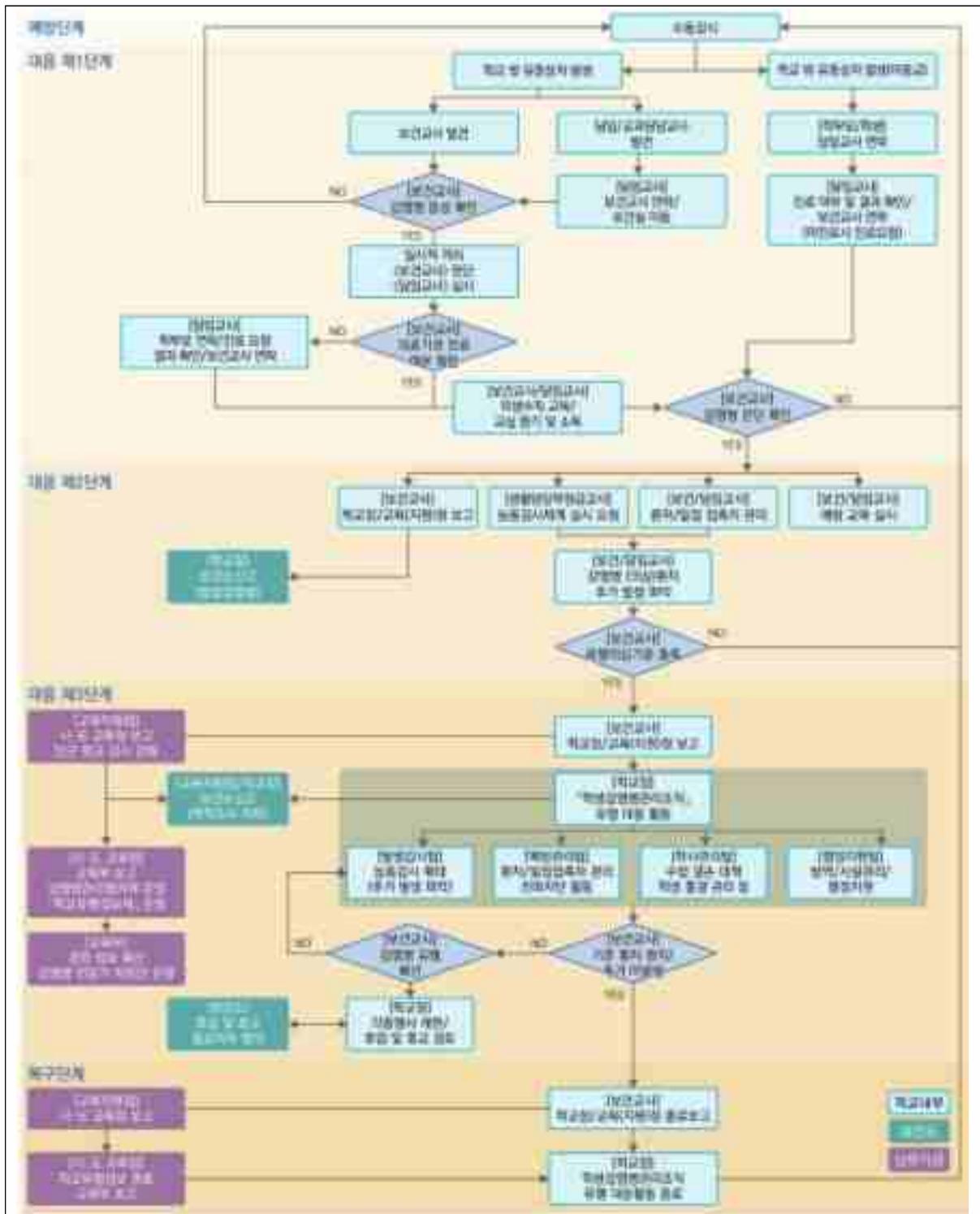
20 . . .

○○ 학교장

참고자료 34

평상 시 감염병 대응 흐름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참조



※ 학교 내 조직구성 및 구성원 역할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35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참조

- 목적: 학년 초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과 역할 숙지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 및 건강 보호
- 조직 운영 시기: 대응 3단계서부터 운영(필요 시 조정 가능)
- 조직 구성 예시(안)



- 역할
 - 발생감시팀: 감염병(의심)환자의 신속한 파악, 밀접접촉자 파악
 - 예방관리팀: 보건교육(위생수칙 등),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유행 확산 방지, 보건소 등 외부기관에서 역학조사 시 협조, 방역물품 수요 파악 및 관리
 - 학사관리팀: 수업 및 출결 관리, (의심)환자 이동이나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에 대한 조치(예: 수업조정, 교실 내 학생 관리 등),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행정처리, 휴업/휴교나 등교 중지 시 학생들의 가정학습과 생활관리, 학부모 대상 상황 파악
 - 행정지원팀: 위생시설 관리, 방역/소독 활동, 예산 및 행정 지원, 방역물품 구매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지원

참고사항

-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은 학교 실정에 맞게 사전에 조직하며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함.
- 해당 매뉴얼에서 제시한 조직 구성과 역할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36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 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 - 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9]]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